

생활 속 법률이야기

B씨는 A씨에게 대금을 지급하며 필로폰을 구해 줄을 요구합니다. 이때 대금을 받은 A씨를 마약류 매매 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마약 매수 요구에 의해 대금을 지급받은 것만으로도 처벌받을까요?

A씨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B씨는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며 필로폰을 구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 A씨는 필로폰을 구하지 못했으나 이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Q : 이때 A씨처럼 대금을 지급받은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A : 답은 No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1. 제3조 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

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 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 제1항·제2항, 제9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35조 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 제5항 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 제5항 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라고 나와 있어 설령 매매가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미수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가 대금을 지급받은 행위로 처벌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A씨의 행위는 마약류 매매 미수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종료함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범죄는 실행에 착수해서 결과에 이르기도 하나, (1) 중도에 좌절되기도 하며 (2) 행위를 종료함에도 결과를 얻지 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刑法에서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해서 범죄가 완료된 경우에는 既遂

실행의 착수는 했으나 범죄의 구성요건의

일부(판례시-구성부분)만을 실행했을 경우에는 未遂

실행의 착수조차 하지 못했을 경우는 豫備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 받았으나,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닌 경우,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인지 여부(소극)에 관하여 판례는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6920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A씨의 행위는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출처/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이야기)